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북한인권 교육주간’ 의 지정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87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충권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지정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규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직접 기념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직접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의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국민의 성숙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함.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함과 동시에 이 날부터 1주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주간의 취지에 맞게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2(북한인권 교육주간) ①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4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인권 교육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 중 제4조4 → 제4조의4

- 정부는 지난 5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하고 통일인식을 제고” 하기 위한 행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한 바 있음.

- 이 날(7.14.)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에서 유래하였고, 탈북민 사회와 유관 부처(통일부,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였으며, 금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에는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식과 각종 부대행사가 진행되었음.

<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개요 >

- 일시·장소 : 2024. 7. 14.(일) 10:00~10:40
- 참석자 : 200여명
- 탈북민은 분야·직능별 대표인사, 단체장, 미래세대, 정착 우수자 등
 - △탈북민 정책 유관부처(통일·외교·행안·복지·고용·국조실 등) △국회(외통위원·기념일 제정 발의 의원) △민주평통·이북5도위·하나재단 △정착지원기관 등
- 슬로건 : ‘자유를 향한 용기, 통일로 가는 여정’



*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철조망)의 매듭이 자유·통일의 희망(새)로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

- 행사 컨셉
- (자유) ‘자유를 향한 용기’를 기리고, 기념일 제정의 의미 조명
 - (희망)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격려, 꿈을 향해 도전하는 탈북민 응원
 - (통일미래) 연대·화합을 통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염원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 개정안은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3호)에서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가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즉,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정하도록 「북한인권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교육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과 같이 “북한인권 교육주간”을 지정·운영할 경우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자신의 천부적 권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있는 북한주민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우리 사회 전체에도 환기시키고 개인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다만, 인권(人權)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도덕적 의무에 관한 문제이자 인도적 지원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북한인권 교육주간”을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연계하여서만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한편, 조문 신설의 정책적 필요성과는 별개로, 개정안에서는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 이어 안 제2조의2로 ‘북한인권 교육주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조문의 일반적인 구성체계에 따를 경우 제2조, 제3조 등에는 해당 법률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이 위치하게 되는 바, 신설하려는 ‘북한인권 기념주간’이 실제적인 사항에 해당되는지(또는 부수적 사항인지) 등을 검토한 후 현행 17개 조문 중 적정 위치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기념일에 관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 법의 주관부처(통일부)가 기존 기념일과의 유사·중복 여부,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통일부는 북한인권이 북한이탈주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7월 14일에 반드시 연계할 필요는 없으며, 「북한인권법」이 처음 시행(2016. 9. 4.)된 날을 기념하여 ‘9월 4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세계인권선언일(12.10.)¹⁾을 기준으로 1주간의 “북한인권 교육주간”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69

1) 참고로 2006년에 제정된 일본의 북한인권법, 즉 「납치문제와 그 외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 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對處に關する法律」 제4조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일(12. 10.)부터 16일까지를 ‘북한인권침해 문제 계발 주간’으로 정하고 있음.